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임원 아닌 직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 등은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1754, 2020.04.20

### 질 의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4년 전직원에게 00보수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노사화합 격려금, 00규정에 의거 식대보조비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 △△부 종합감사 결과 상기 지급건에 대하여 회수의견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음

### 질의내용

- 00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에 대한 손금 여부
- 감사처분 결과 회수통보를 받은 급여에 대해 강제 회수가 가능한지 및 손금불산입 여부
  - 해당 금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 해당 금액이 직원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
  - 노사화합격려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제과-233, 2020.05.19

### 질 의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329, 2020.05.25

### 질 의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해당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 후 법인세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법령부가-1491, 2020.05.25

### 질의

- 갑, 을이 공동소유 중인 부동산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확장을 위한 건물 증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 을 각각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여 갑, 을을 포함한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

한 후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7인의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이에 따라 A법인은 변경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구원과 ◇◇시에 총 \* ,\*\*\*억원의 사업비(이하 "쟁점사업비")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임

### 질의

- 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양도한 후에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쟁점사업비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쟁점 사업비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갑과 을(이하 "공동사업자A")이 의료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이후 건물의 일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공동임대사업자")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함에 따라 공동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갑, 을을 포함한 7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B")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자B가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만을 영위하게 된 공동사업자A와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A가 공제받지 아니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자B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